

임원 결격사유

제39조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래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
 - 2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, 제31조 제6항, 제35조 제2항·제3항,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3. 법 제100조 내지 제106조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